

제목	국문	의료윤리 네 원칙에 입각한 한국보건의료관련 법규분석 및 고찰								
	영문	A Analytic Study on the Korean Healthcare related Laws in respect to the Four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the Respect of Autonomy, Benevolence, Malevolence, and Justice								
저자 및 소속	국문	안유정 ⁵ , 유호종 ⁶ , 이인영 ⁷ , 손명세 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료법윤리협동과정 ⁵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⁶ ,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⁷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 의료법윤리학과 ⁸								
	영문	Ahn You Jeong MD. ⁵ , Ho-jong Yu PhD. ⁶ , In-hyung Lee PhD. ⁷ , Myong-sei Sohn MD. PhD. ⁸ <i>Department of Medical Law and Ethics,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⁵ ⁶ ⁸, Department of Law, University of Kang Won⁷,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Medical College of Yonsei University⁸</i>								
분야	보건관리 [의료법]	발표자	안유정 [일반회원]	발표형식	구연					
진행상황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 2001년 12월 30일									
1. 목적										
최근 2년 간 많은 보건의료관련 법규들이 개정되고 또는 새로이 발표되고 있다. 법이 한 사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규칙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그 사회의 서로 다른 다양한 철학적, 문화적 그리고 윤리적 입장들의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이를 결론들이 내포·명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최근 변하고 있는 한국보건의료관련 법규 속에 내포되어 있는 윤리적 관점들을 찾아내고 이것을 의료윤리의 이론 중 하나인 '의료윤리의 네 원칙'에 맞게 분석·고찰해봄으로 한국 사회의 보건의료에 관한 윤리적 합의들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방법										
한국의 현행 보건의료문제에 관련된 법들 중 의료윤리의 각 네 원칙, 즉 자율성 존중의 원칙, 선행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 그리고 정의의 원칙에 해당되는 법규들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법문들 속에 포함된 내용 중 중요한 사안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그 내용을 법학에서 제시하는 법리에 맞추어 서술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된 법적 해석과 윤리적 관점들을 비교 분석함으로 그 차이와 유사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3. 결과										
한국보건의료관련 법규 중 의료윤리의 네 원칙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법규는 전체 87 개 조항이 해당되었고 이중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해당되는 조문은 12 개, 선행의 원칙에 해당되는 조문은 2 개, 악행금지의 원칙에 해당되는 조문은 39 개, 그리고 정의의 원칙에 해당되는 조문은 34 개에 달하였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서 주로 다루어진 것은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한 동의에서의 정보 제공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고 동의 또는 정보 제공시의 대리인의 범위와 대리인의 설정 사유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악행금지의 원칙은 현행법규에서 보건의료 관련하여 가장 많이 다루어진 내용으로 기밀 누설, 기만행위, 진료중단/치료거부, 지나친 영리를 위한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악행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법으로 두고 있다. 선행의 원칙에 해당되는 내용은 응급환자에서 좁은 의미의 선한 사마리안의 원칙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정의의 원칙에 대한 것은 개개인에게 있어서의 형평성에 근거한 정의의 원칙을 명시하였고 거시적인 정의로의										

분배의 문제에 대하여 전체 예산 중에 보건 의료에 대한 우선성, 그리고 보건의료의 예산 중에 어떤 질환, 집단,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 우선성을 두어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4. 고찰

한국보건의료관련법규에는 의료윤리의 네 원칙에 입각한 각각의 사안들에 대하여 꼴고루 잘 다루어져 있다. 그러나 자율성 원칙에서의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동의의 주체, 즉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동의의 주체 및 대리인의 결정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나, 악행금지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할 무의미한 치료 및 생명유지 치료의 보류 내지는 철회에 관한 현 의료가 당면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인 합의를 이루고 있지 못하는 듯 하다. 뿐만 아니라 선행의 원칙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좀더 보상에 관한 법규들이 요구되고 있으며 정의의 원칙에서는 자원의 할당에 대하여 필요에 의한 자원할당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투여한 노력에 대한 자원의 할당, 그리고 성과와 능력에 기반 한 자원의 할당에 대해 좀더 세밀한 부분까지 다루어 져야만 할 것으로 여겨진다.